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0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11구합443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1. 7. 위 정보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공개하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위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掌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모두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헌법 제11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



무, 정당에 관한 사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관리하는 바(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헌법은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960. 6. 15. 개정된 제3차 개정헌법에서부터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하여 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에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114조 제2항 내지 5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단서).

선거관리 등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와 같은 헌법 규정 등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 각자 독립적으로 전체 공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서 자신의 발언내용이 알려져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없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함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등의 회의내용을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회의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제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들이 그대로 외부에 제공될 경우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



정의 정당한 권위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의결사항의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들 상호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바(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토론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보다는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의결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와 같이 도출된 결론이 공개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결석위원, 배석자, 부의안건, 회의내용, 회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피고는 회의일시, 참석위원, 부의안건, 결정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회의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한 점, ⑥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심의·의결과정 또는 그 합의과정 등을 이를 비공개로 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04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_____

판사 이강호 _____

판사 홍석현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04

목 록

1. 2011. 1. 1.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개최한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2. 제1항 기재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의원, 의안(안건) 및 결정사항
3. 제1항 기재 회의의 회의록 끝.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끝.

■ 헌법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04

제3조(위원회의 직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제1호에 규정된 선거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끝.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위원회의)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에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제4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끝.